

●환경부령 제1079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2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관리
2.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분석·평가
3. 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
4.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그 밖에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제2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1. 기상청에서의 1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로 한정한다)
2. 기상청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제1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는 제외한다)
3.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③ 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

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4(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이하 “지역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본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4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이하 “예보관”이라 한다)을 통한 지원
2.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 및 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5조제2항 중 “기상청장”을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청장”을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상청장”을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영 제14조제1항”을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3(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
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상재해”를 “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35조제1
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청장”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3. 기후업무 전문교육: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으로”를 “법 제35조의3제1항
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로,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관현황(교관”을 “강사 현황(강사”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청장”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
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17조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 을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제17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1년에 3회 이상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법 35조의4 제2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3호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라.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35조의4 제2항제4호	1개월 시정명령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업무 정지 6개월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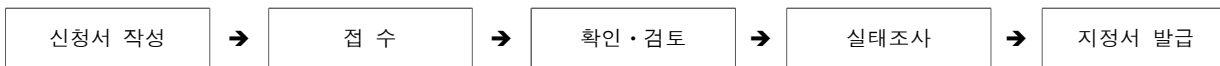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 호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 명 칭:

○ 성명(대표자):

○ 소재지:

○ 지정조건: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직인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상법」 제3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협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이내
------	------	-------------

신청기관	
------	--

기상 과학관	명칭	
	구분	[] 종합과학관(분야:) [] 전문과학관(분야:)
	소재지	
	규모	부지 m ² (평) 건평 m ² (평) (지하 층, 지상 층)
	소장자료	점
	소요예산	천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	--

기상법 제3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기관 제출서류	1.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2.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서류 3.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4.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5.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 계획 6.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기관

처리기관: 기상청

○○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신청기관			검토부서		
구 분	직 급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작 성 자					

기상 과학관	명칭				
	구분	[] 종합과학관(분야:)		[] 전문과학관(분야:)	
	소재지				
	규모	부지 m ² (평)			
		건평 m ² (평)	(지하 층, 지상 층)		
	소장자료	점			
소요예산	천원				

구 분		검토내용
경쟁력· 수요 관련	경쟁력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박물관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수요	※ 유료·무료 관람객 예상 수요 등 운영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예산· 운영 관련	예산	※ 인건비·전시프로그램 운영비·공공요금 등 예상지출액 및 자원조달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운영	※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검토결과 종합		※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의 종합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협의 결과서

신청기관			
검토부서		검토일	
작성 자		전화번호	

구 분		검토내용
경쟁력· 수요 관련	경쟁력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박물관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수요	※ 유료·무료 관람객 예상 수요 등 운영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예산· 운영 관련	예산	※ 인건비·전시프로그램 운영비·공공요금 등 예상지출액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운영	※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검토결과 종합		※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의 종합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사항	기상현상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지점정보 포함[]	
	용도 및 제출처	발급부수	부
수수료 감경·면제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감 경 <input type="checkbox"/> 면 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경(면제)사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납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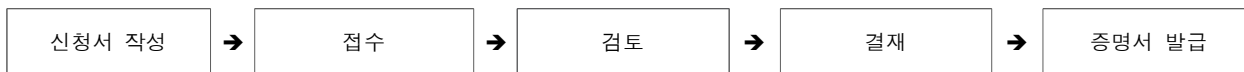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작성방법

1. 기상현상의 종류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자료를 적습니다.(예: 종관기상관측, 방재기상관측, 항공기상관측, 기상특보 등)
2. 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일기상통계표, 호우주의보 등)
3. 지점(지역)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점 또는 지역명을 적습니다.(예: 서울, 강릉, 충주, 서귀포 등)

처리절차



신청인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기상현상증명 담당부서)

기상현상증명서

QR코드

증명사항	기상현상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기상현상의 내용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상현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발급 시각:

- ◆ 본 증명서는 기상청 기상현상증명발급시스템 홈페이지나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조·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 자료는 관측 자료의 오류 보완 등 사후 품질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사항	기상정보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지점(지역)	
	용도	자료종류 및 발급부수
수수료 감경·면제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감 경 <input type="checkbox"/> 면 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경(면제)사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대행하는 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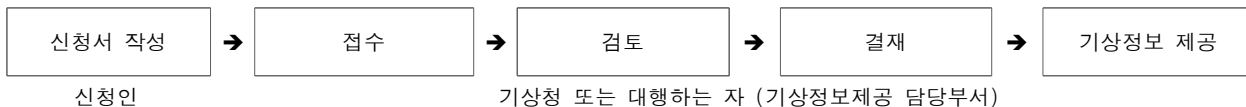
첨부서류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납부 방법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개정이유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보·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예보관의 자격·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국가기상센터·지역기상센터의 세부 설치·운영 기준, 기상업무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 1) 수치모델링센터장은 효율적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수치예보자료의 생산·분석·평가, 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예보관의 자격·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 1) 기상청에서 1년 이상 일정한 예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 3년 이상 예보 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 2)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예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세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 1)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가 유지되도록 함.
- 2)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해당 센터 내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및 별표 1)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함.
-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 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 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